

남녀 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1. 개정이유

최초로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대상이 된 사업주에 대하여 여성고용기준에 미달하더라도 일정한 경우 시행계획서, 이행실적보고서 제출 등 의무를 부담하지 않을 수 있도록 예외를 인정하여 해당 사업주가 준비기간을 거친 후 적극적 고용개선조치를 이행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목 본문 또는 나목에 해당하는 사업이라 하더라도 최초로 법 제17조의3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로서 「고용정책기본법」 제10조에 따른 고용정책심의회 심의를 거친 경우’를 시행규칙 별표2의 ‘여성 근로자의 고용기준에 미달하는 사업’ 제외 사유로 추가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해당사항 없음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의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시행규칙 별표 2의 제1호 다목, 제2호 다목에 ‘가목 본문 또는 나목에 해당하는 사업이라 하더라도 최초로 법 제17조의3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로서 「고용정책기본법」 제10조에 따른 고용정책심의회 심의를 거친 경우는 제외한다.’는 규정 신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별표 2)

현행	개정안
<u>여성 근로자의 고용 기준에 미달하는 사업</u> (제10조 관련) 1. 상시 1,000명 미만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의 경우 가. 생략 나. 생략 <u>다. <신설></u>	<u>여성 근로자의 고용 기준에 미달하는 사업</u> (제10조 관련) 1. 상시 1,000명 미만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의 경우 가. (현행과 같음) 나. (현행과 같음) <u>다. 가목 본문 또는 나목에 해당하는 사업이라 하더라도 최초로 법 제17조의3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로서 「고용정책기본법」 제10조에 따른 고용정책심의회 심의를 거친 경우는 제외한다.</u> 2. 상시 1,000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의 경우 가. (현행과 같음) 나. (현행과 같음) <u>다. 가목 본문 또는 나목에 해당하는 사업이라 하더라도 최초로 법 제17조의3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로서 「고용정책기본</u>

	<u>법」 제10조에 따른 고용정</u> <u>책심회의의 심의를 거친 경</u> <u>우는 제외한다.</u>
--	--